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6,029,179	16,380,875
일반회계	414,945,659	12,448,370
특별회계	131,083,520	3,932,506
공기업특별회계	42,313,603	1,269,408
상수도공기업	26,671,664	800,150
하수도공기업	15,641,939	469,258
기타특별회계	88,769,917	2,663,098
이원지구간척사업	5,977,100	179,3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6,381,790	1,391,454
의료급여기금운영	651,253	19,538
주민소득지원사업	5,504,500	165,135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2,506,522	75,196
관광경영개발사업	84,700	2,541
수산자원조성	22,360,000	670,800
도시기반시설	93,445	2,803
학교급식지원센터	5,210,607	156,31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588,75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